

長係	長部	長局	長次	長總	副議	議長

96
95

四八軍十有三月
第八次會議
報告 濟

檀紀四千二百八十四年十一月三十日

大統 領 李承

憲法第九十八條에 依하여 憲法의 改正을 提議하나다

憲法改正의 提議

- 國務委員 國務總理署理 社會部長官 許政
-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李
-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卞
-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李
-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李



國會議長 申 翼 熙 貴 下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趙 德 謙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白 奎 禧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任 文 樞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金 東 勳

國務委員 保健部長官 吳 興 胤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金 鍾 勳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孫 基 永

國務委員 李 允 榮

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三十一條에 다음의 一項을 加한다

國會之下院과 上院으로 構成한다

第三十二條

兩院은國民의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依하여組織한다

員으로써組織한다

누구든지同時에兩院의議員이될수없다

兩院議員의定數와選舉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第三十三條

下院의議員의任期는四年으로한다

上院의議員의任期는六年으로하고二年마다議員의三分之一을改選한다

一을改選한다

第三十五條

臨時緊急의必要가있을때에는大統領 下院의

在籍議員四分之一以上또는上院의在籍議員二分之一以上

의要求에依하여兩院의議長은共同하여國會의臨時會의集

會를公告한다

第三十六條

下院은議長一人副議長二人을選舉한다

上院은副統領을議長으로하고副議長二人을選舉한다

第三十七條 兩院은憲法또는國會法에特別한規定이 없는限
그在籍議員의過半數의出席과出席議員의過半數로써議決
을行한다

下院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 가진다

兩院의議長은議決에있어서可否同數인境遇에決定權을가
진다

第三十八條中「國會의會議」를「兩院의會議」로「國會의決議」를「下院
의決議」로改正한다

第三十九條中「國會議員」을「兩院의議員」으로改正한다

第四十條 兩院에서可決된法律案은政府로移送되어十五日

以內에大統領이公布한다

移送된法律案이對하여異議가있는 때에는大統領은異議書
를附加하여兩院中의一院에還付하고그院은再議의權을 가진다

議의 結果 二院의 在籍 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 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는 大統領의 異議書와 함께 이를 다른 院에 送付하고 다른 院에서 再議에 附하여 그 院에서 同一한 節次로 可決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内에 公布 또는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大統領은 前二項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還奉함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二十日을 經過하면 効力을 發生한다

第四十條이다 음一項을 加한다

豫算案은 前과 下院에 擬議하여야 한다

第四十三條中「國會議員」은「兩院」은으로改正하고다음의一項을加한다

兩院의國政監査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第四十四條中「國會」을「兩院」으로「國會」의를「兩院」의로改正한다

第四十五條第一項中「國會」을「兩院」은으로第二項中「議員」을「兩院」이그議員을으로改正한다

第四十六條第二項中「議員五十人」을「下院議員五十人」으로「在籍議員」을「兩院」에서各々그在籍議員으로改正한다

第四十七條第二項中「國會議員」을「上院議員」으로改正한다

第四十八條中「國會議員」을「兩院」의議員으로改正한다

第四十九條中「國會議員」을「兩院」의議員으로「國會」의同意를「兩院」의同意로「國會」의要求를「兩院」의要求로改正한다

第五十條中「國會議員」을「兩院」의議員으로「國會」內를「兩院」內로改正

98

한다

第五十三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 投票에 依하여 連名으로 同時에 選舉된다

國會開會中에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舉를 行하는 때에 는 兩院의 議長은 共同하여 國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特別市와 各道의 選舉委員會가 證明한 後 封緘한 大統領과 副統領에 關한 選舉報告는 上院의 議長이 送付하여야 한다

上院의 議長은 即時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된 兩院合同會議에서 前項의 選舉報告를 開封한 後 投票數를 計算하여 大統領과 副統領으로 選舉된 者를 公表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에 關한 投票中 最高得票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第一 最高得票가 二以上인 때에 는 前項의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當選을 決定하고 이 때의 過半

數의 得票가 없으면 決選投票를 行하여 多數得票를 當選으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舉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있다

第五十四條中「國會」를 「兩院合同會議」로 改正한다

第五十五條第二項을 削除한다

第五十六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次

도 그 任期가 滿了되는지 三十日前에 그 後任을 選舉한다

大統領이 關任된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 되며 그 任期는 前

任 大統領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이 모두 關任된 때에는 即時 그 後任을 選舉하

여야 한다

前項의 境에 是 後任의 大統領이 就任할 때까지 國務總理가

大統領의職務를執行한다

第六十條中「國會」를「兩院」으로改正한다

第六十九條第一項中「國會議員」을「下院의議員」으로改正한다

第八十一條第三項中「國會議員五」을「下院의議員三人과上院

의議員二人」으로改正한다

第九十八條第一項中「大統領」은「國會議員在籍議員三分之一以

上」을「大統領」下院의在籍議員三分之一以上 또는 上院의在

籍議員三分之二以上」으로第四項中「國會에서」를「兩院에서各

各」으로改正한다

附 則 (檀紀四二八年 月 日憲法改正)

이憲法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이憲法施行時의國會議員은下院의議員으로하고그在期는國

會議員의在期의殘期로終了된다

이憲法이施行된後 처음으로選舉된上院의議員은特別市와各道마다 그得票數의順次에 따라第一部 第二部 第三部로 나눈다 第一部の議員의任期는六年 第二部の議員의任期는四年 第三部の議員의任期는二年으로한다 萬一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依한다

처음의上院의議員이選舉된때까지는下院의議決을國會의議決로한다

이憲法施行時의大統領과副統領은이憲法에依한大統領과副統領으로하고그任期는禮紀四千二百八十五年七月二十三日로써終了된다

憲法改正提議理由書

이憲法改正提議의 主要한 內容은 兩院制度와 大統領 副大統領 接選舉制度의 採擇에 있습니다.

一 兩院制度의 採擇

兩院制度와 單院制度의 長短에 關하여서는 論議가 많고 各의 意見이 一致된 바 없으나 兩院制度가 國會의 慎重함이 甚重한 決事 通過를 避할 수 있다는 點, 多數黨의 專斷을 防止할 수 있다는 點, 政府과 國會의 衝突을 緩和할 수 있다는 點, 主權의 比較的 老練하고 圓滿한 人物을 選出할 수 있다는 點 등의 長處를 가진 것이 着眼하여 美, 英, 佛, 比, 伊, 日 等의 世界 大多數의 國家는 兩院制度를 採擇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憲法은 建國 初期에 있어서의 特殊事情에 의해서 國體를 迅速히 變遷할 수 없게 되어 單院制度를 採擇하였던 것이

國會가 여러難關이 있었음에도不拘하고只今까지 이루어진바
業績은甚大한바있고 그功績은 높이評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國民의意嚮을忖度하여上述한바兩院制度의長莫을
活用함으로써國會를 더욱強化하고國家百年의大計를確立
하기爲하여世界大多數國民主友邦과같이이에兩院制度를採
擇하려는 것입니다 一部論者는上院이特殊層의代辯者가
될念慮가있다하여이를非難하지만上院亦是國民의普通平
等直接秘密의投票에依하여選舉되는議員으로써構成하러
는것이므로이러한非難은全히成立의餘地가 없을것입니다

二 大統領 副統領 直接選舉制度의採擇

國民이主權을가지는民主國家에있어서는모든公務員은主
權을가진國民의公僕이러나서는國民에對하여責任을지
는것입니~~다~~다 大統領亦是公務員의한사람일뿐만아니라行

政府의 首班이며 國家를 代表하는 重責을 가지는 것이므로 다
 是公務員보다 一層 더 主權者인 國民의 意思가 그에게 直接的
 으로 反映浸透되어야 할 것이며 副統領亦是 그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보면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選舉한다든가 國民이 間接적으로 選舉한다든가 하는 것은 民
 主의 義의 理想에 徹底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理想에 맞도록 大
 統領과 副統領의 直接選舉制度를 採擇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大統領과 副統領을 連名으로 同時에 選舉하게 한 것은
 大統領과 副統領이 表裏一體가 되어야 할 兩者의 緊密한 關係
 에 着眼하여 政見과 主張을 같아서는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出
 하려는 것인데 그 細則은 其次 條 條를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舉
 에 關한 法律이 特히 明白하여 示할 것입니다.

물론 본 改正의 條 條에 副統領亦是 國民의 直接投票이 容許

여選舉된것이므로 그地位 및權限을若干強化하였음니다. 卽
美國과같이 副統領이當然히 上院議長이 되게 하고 또 現行法
上으로는 大統領이關任가 되면 副統領의任期가當然히終了
되는것을改正하여 이境遇에서 副統領이 그대로 大統領이 되
게 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副統領亦是國民의信望을받아 公選
되었다는 뜻에着眼한것입니다.

改正提議의條文別理由書

一 第三十一條第二項을新設하되 兩院制를採擇하는當然의
結果임

一 第三十二條第一項은 兩院을 다같이普通平等直接秘密의選
舉原則에依하여公選된議員으로서組織하러는것임

第二項은 兩院相互獨立의原則의當然의結果임

第三項은 兩院議員의定員과選舉에關한細則은法律로써定
하러하러는것임

一 第三十三條第一項은 下院의議員의任期를現國會議員의그
것과같이四年으로하러는것임

第二項은 上院의議員의任期를六年으로하되二年마다議員
의三分之一을改選하러는것인데 이것은 下院의議員이四年
마다全員改選되는데對하여 上院의永續性及事務的인點

敍性を確保하려는 것임

一 第三十五條를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인데 議員數가 많은 下院과 議員數가 적은 上院과의 均衡을 맞추기 위하여 臨時會要求의 定足數에 差異를 둔 것임

第二項을 削除한 것은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舉報告의 接受投票의 計算當選의 公表를 爲한 國會의 集會는 따로 第五十三條第二項에 規定하기 때문임

一 第三十六條를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인데 副統領이 當然히 上院議長이 되게 하였음

一 第三十七條를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인데 副統領인 上院議長에게 는 表決權을 주지 않았음

一 第三十八條乃至 第四十條를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採擇한 當然의 結果임

03

一 第四十一條第二項을新設한것은下院이豫算先議權을주려
는것이인데이것은世界各國의通例가되어있음

一 第四十三條를改正한것은兩院이같이國政監查權을付與하
려는것이인데第二項을新設한것은國政監查法의制定을豫想

한것임

一 第四十四條 第四十五條를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한

當然의結果임

一 第四十六條를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인데彈劾

訴追의發議權은下院에^{議員}가만주었음

一 第四十七條第二項을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인

彈劾裁判所의國會側審判官의資格은上院議員에게만주

었음

一 第四十八條乃至第五十條를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한

當然의 結果임

一 第五十三條第一項은 大統領과 副統領이 國會 兩院의 議員과
같이 國民의 普通平等 直接 秘密의 投票에 依하여 連名으로 同
時에 選舉될 것을 規定한 것임

第二項은 第三十五條第二項이 削除된 것을 体裁上 本條第二
項으로 新設한 것임

第三項과 第四項은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舉에 있어서 投票의
計算과 當選의 公表가 上院의 議長 管掌下에 國會의 兩院 合同
會議에서 行하여질 것을 規定한 것임

第五項은 當選決定에 關한 節次를 規定한 것인데 二 以上の 最
高得票가 있는 極端的인 例외의 境遇에 是 兩院 合同會議에서
選舉하러는 것임

第六項은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舉에 關한 細則은 法律로써 定

취하게 하려 하는 것임

一 第五十四條를改正한것은 兩院制度를採擇한當然의結果임

一 第五十五條第二項을削除한것은 第五十六條第二項에서大

統領이關位된때에는 副統領이大統領이되게한結果임

一 第五十六條를改正한것은 大統領이關位된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되게하고 大統領과 副統領이모다關位된때에는 即

時後任者를選舉하되 그間隙期間에는 國務總理로하여 大

統領의職務를執行케하려 하는 것임

一 第六十條를改正한것은 兩院制度를採擇한當然의結果임

一 第六十九條第一項을改正한것은 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인

디 下院의議員의總選舉後처음國會가開會되었을때에 國務

總理에對한國會의承認을 다시언제하려 하는 것임

一 第八十一條第三項을改正한것은 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인

이憲法委員會의國會側委員數를下院은三人上院은二人으로하려는것임

一第九十八條第一項을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인
이憲法改正의提議에있어서는下院에서는在籍議員三分之
一以上 上院에서는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으로하여數的
均衡를맞추려는것임

第四項을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임

一附則第二項은現國會議員을全部下院의議員으로하고그任
期는國會議員의任期의滿了로써終了시키려는것임

第三項은第三十三條第二項의結果로서第一回의上院의議
員의選舉에있어서는得票數의順次에따라그任期를各々六
年 四年 二年으로하려는것임

第四項은憲法改正이施行된날로부터第一回의上院의議

員이選舉~~할~~ 때까지의國會의活動에關한經過規定인데이期
間中에는現國會가轉化한下院의議決을國會의議決로하러
는것임

一第五項은現大統領과副統領을이憲法改正에依한大統領_의
로하고그任期를現大統領과副統領의任期의滿了로써終了
시키러는것임

공백